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4. 10. 11. (금)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종갑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 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안 제6조)
-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안 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농촌지역 생활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이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지역 생활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져 그동안 제공되거나 공급되던 생활서비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국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들이 경제·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을 제정(‘23.08)하였고, 올해 시행되었음(‘24.08)
- 이에 법 시행에 대응하여 충북차원에서도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계획 및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함

나. 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4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제4조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타당하다 보여짐
- 안 제6조~제7조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8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에 대한 사항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해결에 있어 농촌 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을 통해 보완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안 제9조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과제발굴, 사업추진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정책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시·도 계획의 수립을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충청북도 차원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는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의 부족이 인구감소 및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바 농촌 주민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농촌 주민들이 주도적·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 기대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기존사업을 개선·보완해 나가고 주민의 독려를 통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공동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